

제주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가단689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애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민철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각 토지에 관하여 2022. 10. 11. 체결된 증여의 합의해제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22. 10. 14. 접수 제78031호로 말소된 같은 법원 2018. 3. 12. 접수 제25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초 피고 소유였던 별지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2018. 3. 12.경 2018. 3. 7.자 증여를 원인으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22. 10. 14.경에 이르러 2022. 10. 11.자 증여의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를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0. 10. 1.경부터 2022. 7. 30.경까지 연인관계였던 C에 대하여 1억 6705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합의해제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그런데 갑 제7호증(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8. 4. 18.경 2018. 4.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매매예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언제든지 소유권이 회복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당초부터 C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2022. 10. 11.자 증여의 합의해제 대신, C에 대하여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으로서 회복하였다면 사해행위의 요건 구비 여부는 매매예약이 이루어진 2018. 4. 11.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발생하기도 이전이므로, 그러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게 된다. 그런데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가져오는 이 사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고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해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

